

IV. 국내 기업휴지보험 운영 현황 및 평가

1. 상품 운영현황

가.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1) 영문약관

우리나라의 기업휴지보험은 주로 산업시장이 1차 산업 중심이었던 60년대까지는 수요가 거의 없었으나 1968년부터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수요가 발생하였다³⁵⁾. 그 당시에는 소규모 건물 등에 화재보험을 운용하여 온 관계로 해외 재보험 출재 등의 필요성이 낮았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외국의 차관업체의 요청 등에 따라 재보험출재가 가능한 영문약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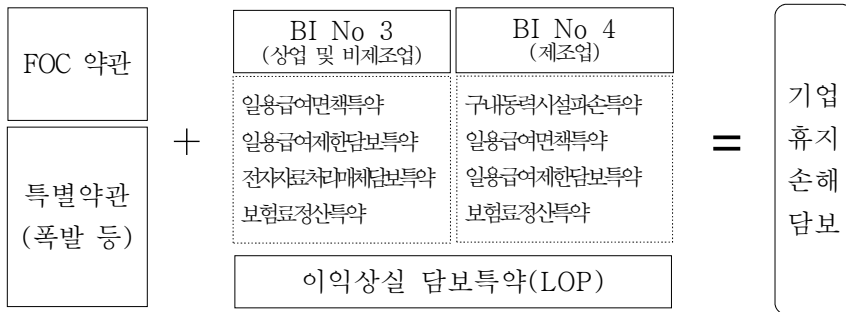
영문약관과 국문약관의 차이점은 보험요율과 담보위험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보험요율의 경우 영문약관은 외국재보험자가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며 정부의 사전인가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지만 국문약관은 개별 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하는 요율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의 인가를 거친 제출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35)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영문약관에는 1968년 8월 20일에 인가를 받은 F.O.C(Foreign Policy)과 1971년 8월 17에 인가받은 American Standard Fire Policy와 기타 영문약관(Commercial Union Fire Policy;1983.6.3,Korea Pacific Chemical Fire Insurance Policy;1977.12.31)이 있다. 이와 같은 영문약관은 계약자들이 국문약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보험료율이 낮다는 이유로 영문약관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 당시 재무부에서 1973년 2월 21일에 ①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300만불을 초과하는 물건, ②외국인 소유물건, ③외국의 차관 또는 합작투자업체 물건에만 한정하여 영문약관의 사용을 허용하는 “영문약관 사용제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로 인해 화재보험에 서는 약관 및 요율의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표 IV-1> 화재보험의 국·영문약관 비교

구 분	국 문 약 관	영 문 약 관
보통약관	화재보험보통보험약관	FOC Form American Standard Fire Policy
적용물건	제한없음	증권당 300만달러이상, 외국차관업체 등
보험요율	국내사 산출, 적용	재보험자 산출적용

<그림 IV-1> 영문약관 기업휴지보험특약 종류



기업휴지보험은 부보한 재물의 화재위험이 먼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화재보험보통약관에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통약관에 따라 특성이 있다. 최초의 기업휴지보험은 1970년 9월 24일 미국식(gross earning form) 기업휴지보험특별약관(제조업체용)이 영문화재보험약관(FOC policy)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가되었다. 그 후 1983년 2월 4일에는 영국식 이익보험약관(loss of profits)과 상업 및 비제조업체용(gross earning form no.3 상업용, gross earning form no.4 제조업체용)의 미국식 기업휴지보험 약관이 인가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³⁶⁾

36) 또 하나의 기업휴지보험인 기계보험의 기업휴지보험은 1970년 10월 22일 서독식 기계이익보험특별약관(loss of profits machinery breakdown insurance standard policy)이 기계보험보통약관에 첨부되는 형태로 인가되었다. 1976년 4월 24일에는 미국식 기업휴지보험특약(use and occupancy endorsement actual loss sustained, no specified daily indemnity)이 미국식 기계보험약관(Boiler and Machinery Policy)에 첨부하는 약관으로 인가

<표 IV-2> 영문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실적

(단위 : 건, 천원, %)

구분	연도	계약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일반	1986	3	3,382	-	-
	1990	5	56,619	-	-
	1995	2	33,504	-	-
	2000	-	-	-	-
	2005	1	8	-	-
	2006	1	261	-	-
공장	1986	17	225,969	-	-
	1990	23	194,896	4,214,644	2,162.5
	1995	16	11,976,529	-	-
	2000	-	-	-	-
	2005	-	-	-	-
	2006	-	-	-	-
계	1986	20	229,351	-	-
	1990	28	251,515	4,214,644	1,675.7
	1995	18	12,010,033	-	-
	2000	-	-	-	-
	2005	1	8	-	-
	2006	1	261	-	-

현재 운영 중인 영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미국식과 영국식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담보방식, 보험금액 결정, 보상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담보방식의 경우 영국은 총이익 방식(gross profit)인 반면에 미국은 총수익 방식(gross earning)이다. 영국식의 경우 총이익의 결정은 가산방식과 차액방식이 사용된다. 가산방식은 영업이익(net profit)에 보험가입경상비를 합한 금액이 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경상비에서 영업손실과 보험가입경상비의 곱을 총경상비로 나눈 값이 이에 해당된다. 차액방식의 경우에는 매출과 기말재고액의 합계에서 기초재고금액과 기중 구입비와 특정변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미국식의 총수익방식은 기업휴지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되었다. 오해송(1996), p. 116

없는 비용을 공제한 총수익의 감소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휴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총수익의 산출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제품의 순판매액, 구입상품(재판매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순판매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기타 수입의 합에서 생산의 원천이 되는 원재료, 원재료를 제품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영문약관의 상품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 영국식 및 미국식 약관의 비교

구 분	영국식 기업휴지보험	미국식 기업휴지보험
약관명	이익상실담보특약(Loss of Profit)	기업휴지담보특약(상업, 제조업체)
담보방식	총이익(gross profit) 순이익+부보경상비	총수익(gross earning)
인수형태	특약담보	특약
담보위험	화재, 폭발 등 담보위험 명시(국내는 보통약관의 담보위험)	보통약관의 담보위험
보험금액	연간총이익(annual gross profit)	연간총수익×약정부보비율
요율요소	기본담보요율, 약정복구기간	기본담보요율, 약정부보비율
복구기준	매출액복구	손상된 재산의 물리적 복구
보상기간	약정복구기간 한도내	보험금액의 한도까지 기간에 무관하게 보상(통상 1년)
가입금액 감액	감액됨	사고후 자동복원
손해보상후 사업중단	보험금 불지급	보험금지급
손해액	영업수익감소액×총이익율+감소방지 비용(특별비용)	총수익감소액·비지속비용+손해경감 비용
보상방식	손해액×가입금액/가액	손해액×가입금액/(가액×부보비율) : 약정부보비율방식
요율	동산요율이 기초요율(재물요율보다 높다)	건물요율이 기초요율(재물요율보다 낮다)
보상방법	비례보상적용	비례보상 적용

자료 : 이종섭(2004), pp.182-226에서 비교 정리함

2) 국문약관

기업휴지 등의 특별한 리스크에 대한 국내에서의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가격산출이나 리스크관리에 대한 수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해외 재보험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시장에서는 활용되지만 국내에는 상품이 없는 확장담보특약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 1987년 11월 2일에 기업휴지보험특약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표 IV-4> 국문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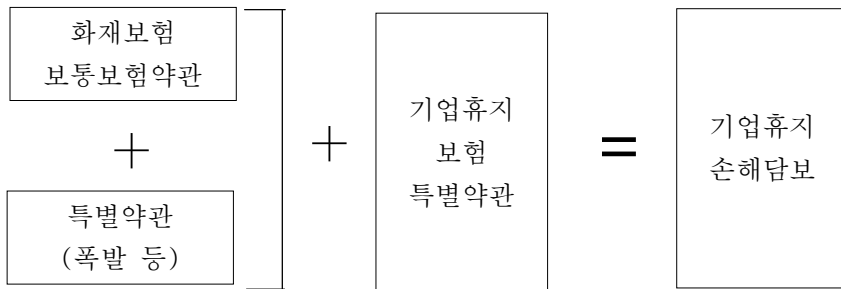
(단위 : 건, 천원, %)

구 분	연 도	계약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일 반	1986	1	132	-	-
	1990	4	3,008	21,846	726.3
	1995	20	17,838	-	-
	2000	27	27,029	-	-
	2005	7	44,473	2,263	5.1
	2006	12	55,719	-	-
공 장	1986	7	24,482	-	-
	1990	17	85,792	-	-
	1995	54	291,887	-	-
	2000	19	144,772	-	-
	2005	15	147,112	70,000	47.6
	2006	13	180,034	164,916	91.6
계	1986	8	24,614	-	-
	1990	21	88,800	21,846	24.6
	1995	74	309,725	-	-
	2000	46	171,801	-	-
	2005	22	191,585	72,263	37.7
	2006	25	235,753	164,916	70.0

국문약관의 시장규모는 연 20여건의 기업휴지보험특약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보험료는 2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상업용 물건(commercial property)이 주로 가입하는 일반물건을 보면 10건 내외로 보험료가 1억원이 되지 않는 아주 미약한 실정에 있다. 이에 비해 제조업 등이 가입하는 공장물건의 경우에는 연간 계약건수는 10건이 조금 넘으며 보험료도 2억원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문기업휴지 특약은 영문약관과 동일하게 보통약관에 특약형태로 첨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재 이외의 위험(peril)으로 인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 국문 기업휴지보험특별약관에 규정되고 있는 확장담보위험은 폭발, 풍수재해, 전기, 소요노동쟁의, 차량위험, 악의적인 파괴행위 등이 있다.

<그림 IV-2> 국문기업휴지보험 상품의 운영체계



국문약관에서 기업휴업손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재산에 대한 유효한 재물보험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그 계약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지출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material damage proviso). 따라서 계약자가 기업휴지위험만을 떼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일본의 이익보험과 유사하게 총수익방식으로 되

어 있는 동시에 영국식 약관에서 사용하는 복구기간 등을 채용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담보위험은 미국식의 총수익 방식으로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경상비와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net profit)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또한 이때 고려되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복구기간(restoration period)과 면책기간(waiting period)인데 실제 지급보험금은 복구기간동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을 한도로 하나 이를 6개월 등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의 손실액 면책기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하여 지급한다.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times \text{약정부보비율}}$$

여기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begin{aligned} \text{손해액} &= \text{매출액감소액} \times \text{이익률} - \text{비지출고정비} \\ &= (\text{전년도매출액} - \text{복구기간 매출액}) \times \frac{\text{영업이익} + \text{고정비}}{\text{전년도매출액}} \\ &\quad - \text{비지출고정비} \end{aligned}$$

위의 보험금 지급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약자의 구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복구기간 동안 매출액이 없고 복구기간 동안 비지출고정비(지출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가 없다면 기업휴지보험계약의 목적이 영업이익과 고정비의 합(보험가입금액)이 됨을 알 수 있다.

국문약관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기업휴지를 발생시키는 담보위험에 대한 요율(이를 기초요율이라 함)에 기업휴지보험특약에서 정한 담보조건별 요율요소를 곱하여 산출한다. 기초요율은 기업휴지의 원인이 되는 화재담보요율을 적용하며 화재이외의 다른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복구기간계수는 최저 1개월(0.46)에서 최대 36개월(0.87)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책기간계수는 최저 7일(0.95), 10일(0.925), 14일(0.9), 21일(0.875), 30일(0.8)을 적용한다.

$$\text{기업휴지담보보험료} = \text{기업휴지보험가입금액} \times \text{기초요율} \times \text{면책기간계수} \\ \times \text{복기기간계수} \times \text{약정부보비율계수}$$

약정부보비율계수는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을 달리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최저 50%, 60%, 70%, 80%, 90%까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0%의 경우 일반물건 1.39, 공장물건 1.69를 적용한다.

나. 재산종합보험(Package All Risk Policy)

1) 약관체계

재산종합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화재보험과 같이 화재위험과 같은 하나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monoline)이 아니라 재물손해, 배상책임, 기업휴지손해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적으로 담보하며 해외재보험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으로 1968년에 최초로 판매되었다. 동 보험은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상업용 재물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과 유사한 개념의 보험 상품이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의 담보위험 제한, 가격탄력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적인 상품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성 재물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성장하였다. 재산종합보험의 2006년도 보험실적을 살펴보면 8,890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6,375억원의 보험료가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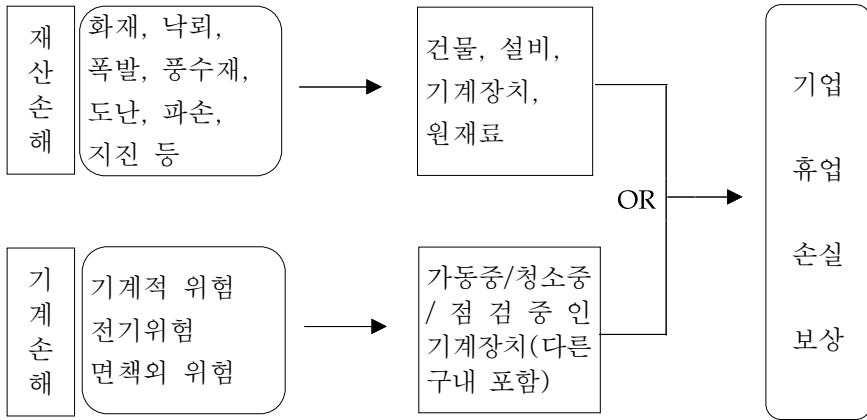
<표 IV-5> 재산종합보험의 담보위험 체계

	담 보 구 성	면책/확장담보	세 부 사 항
Package Insurance Policy	Master Schedule	부보명세서	
	Operative Clause	약관전체 적용특약	보험계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규정
	General Exclusion	약관전체 면책사항	
	General Condition	약관전체 계약조건	
	Section I : Property All Risks Cover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provision applying to	
	Section II : Machinery Breakdown Cover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provision applying to	
	Section III : Business Interruption Cover	special exclusion	
		provision applying to	gross profit basis standing charging basis
		additional memoranda application to	off-premises power
	Section IV : General Liability Coverage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1		pollution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	
special extension 1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Cover(복미수출부담보)	
provision applying to			

재산종합보험의 약관구성을 보면 공통적용사항(Operative Clause), 제1부문 재산손해조항(Section I : Property All Risks Cover), 제2부문 기계파손 조항(Section II : Machinery Breakdown Cover),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조항(Section III : Business Interruption Cover), 제4부문 배상책임조항(Section IV : General Liability Coverage)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휴지손해담보는 제2부문의 재물손해조항 또는 기계위험담보조항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목

적물³⁷⁾에 물적 손해(physical damage)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이익감소를 보상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림 IV-3>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담보체계



재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기업휴지보험실적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2006년 기준으로 회사들이 제공하는 통계에 기초하여 이를 추정하여 보면 800억원³⁸⁾ 정도로 보인다. 보험회사들이 재산종합보험의 담보별 세부 통계자료를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기업휴지담보의 계약건수와 보험료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계약건수는 625건이며 보험가입금액은 34조 1,283억원에 이르고 있고, 보험료는 258억이다. 또한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 가입현황을 보면 2002년 22%에서 2006년에는 9.5%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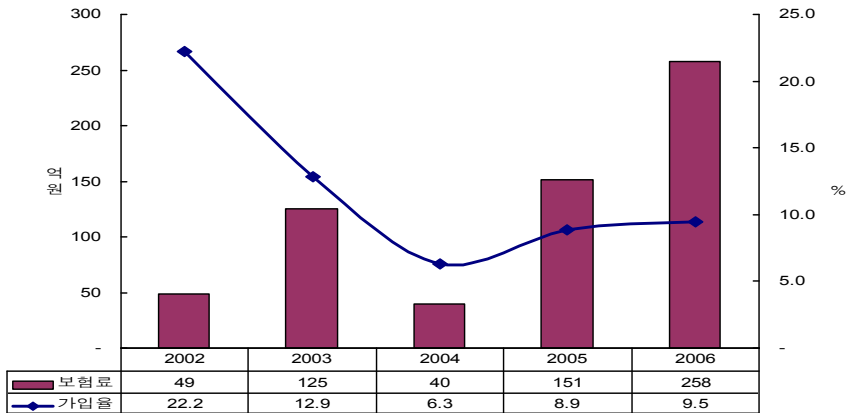
37)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금, 금은괴, 동전, 수표/인지, 미술품, 문서, 장부, 컴퓨터, 설계도 등 고가품, 건축/조립 기계적 성능시험을 포함한 시운전중인 재물 및 그로 인한 기업휴지손해, 육해공 운반용구, 동물/조류/어류 등 생명체, 임목 또는 채배적인 작물, 토지/도로/차도/활주로/운하/댐/터널, 지하의 재물/터널내부의 파이프, 해상외의 재물, 운송중인 상품이나 재물, 가공생산 과정에 투입된 촉매 및 소모성 재료이다.
 38) 2006년 재산종합보험의 보험료(6,376억)에 세부담보 합계 보험료 중 BI보험료 비중(12.1%)을 곱하여 추정시 773억원이 산출됨.

<표 IV-6>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담보 현황

(단위 : 건,억원,%)

연 도	건 수	보험금액	보험료	사고건수	보험금	손해율
2002	139	20,302	49	43	35	71
2003	381	97,940	125	7	45	36
2004	305	44,505	40	-	-	-
2005	573	458,157	151	1	3	2
2006	625	341,283	258	95	94	37

<그림 IV-4>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보험료 및 가입율 추이



2) 기업휴지손해담보 내용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담보는 영국식인 총이익기준(gross profit basis)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의 규정방식은 화재보험이 영국식과 미국식을 혼합한 하나의 형태인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재산종합보험의 담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기준을 보면 이 증권 하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재산종합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재산손해담보와 기계과손 담보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매출액이 감소됨에 따른 총이익(gross

profit)의 손실과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즉 특별비용(increase in cost of working)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부보경상비만을 담보 받고자 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상비보상조항(standing charge basis)을 따로 두고 있다. 이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액은 총 이익방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손해담보 또는 기계파손부문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보상기간동안의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부보경상비와 특별비용을 포함한다.

재산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담보는 화재보험과 비교할 경우 담보위험에 의한 물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담보위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은 화재위험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위험은 특약을 첨부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재산종합보험에서는 재산손해조항에서 면책³⁹⁾으로 하고 있지 않은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 모든 위험으로 인한 기업휴업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재물담보조항은 종합위험(all risk) 담보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로 인한 손해의 경우 특별약관을 첨부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위험담보에서의 기업휴지 손해는 공장 구내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에 담보하는 원인⁴⁰⁾에 의해 수리 또는 대체가 필요한 급격하고 우연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휴지손해담보조항은 물적 사고나 기계적 사고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별면책사항(special exclusion to section III)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
- 39) 재물손해담보에서 제외하는 위험은 누출 및 오염으로 인한 손해와 비용, 고의적으로 설계허용치 또는 안전한도를 초과한 운전, 작업철회 등 태업, 침하/사태/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자연발화/침식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손해, 발효/증발/품질의 변화에 의한 손해, 기계/전자/전기 장치 등의 고장/장해/파열, 단락/자체발열/누전/과전류/과전압, 결합부품/작업하자/설계상의 결함, 잔존물제거비용/청소비확장담보에서 담보하지 않은 비용, 저장용기내의 내용물의 누출/넘침 등이다.
- 40) 기계사고담보원인은 ① 재질결함, 설계결함, 건설 및 조립상의 결함, ②진동, 오조절, 느슨한 부품, 피로현상, 원심력, 윤활유 부족, 부분적 파열,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결함, 연결된 기계의 고장이나 결함 등으로 인한 우연한 가동 중 사고 ③전압의 과부족, 절연실패, 단락, 정전기 ④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자질이나 기술부족 또는 과실 ⑤ 추락, 충격,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이물질의 유입 또는 이에 의한 장애 등이다.

① 건물이나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령, ②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취소 ③ 물적 손해의 복구 또는 조업의 재개나 지속이 동맹파업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됨으로써 증가된 손해, ④진행 중인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결과적 기업휴지손해, 예정이익 상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하지 않는다.

기업휴지보험금은 보상기간동안에 발생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손실액(표준매출액⁴¹-실제매출액)×총이익율)과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인 특별비용(increasing in cost of working)의 합에서 총이익(gross profit)⁴²에 포함된 비용 중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됨으로써 지출이 중지되거나 감소된 비용은 제외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러한 보상방식을 화재보험과 비교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에서는 약정보비율이 없어 비례보상이 적용되며, 가입금액은 보험금 지급 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복원을 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에서는 추가특약을 첨부하여 우발적 간접손실(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loss)을 담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과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추가조항으로는 구외동력시설 파손으로 인한 기업휴지확장담보(off premise power clause), 고객업체의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 확장담보(customers extension clause)가 있다. 전자의 경우 계약자가 부보한 공장 구외에서 전력, 가스 또는 동력,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기업휴지가 발생한 경우를 확장 담보하며, 후자의 조항은 명기된 고객의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래된 기업 휴지손해를 사고 당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한다.

41) 표준매출액은 사고일 직전 12개월로부터 보상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1일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기간이 3개월인 경우의 표준매출액은 2006년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42) 총이익은 (매출액 + 기말재고자산)-(기초 재고자산+변동비), 총이익률은 사고 직전 회계 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총이익의 비율이다.

3) 보험요율 적용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에서는 보험료 정산조항(premium adjustment clause)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서 과거 1년간의 총이익에 기초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의 75%를 잠정보험료로 낸 뒤 보험기간동안의 총이익이 확정된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되 추징 환급하는 보험료는 잠정보험료의 1/3이 한도가 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은 해외 보험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 상품에 해당되며, 1968년 상품 도입초기부터 해외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보험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여 온 관계로 요율수준이나 요율산출체계 등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계약 실적이나 손해율 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재산종합보험을 활용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전가비용인 보험료가 정확하게 추정될 필요성이 있으나 그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해외 재보험자들에게 가격 산출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휴지보험의 비활성화의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도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자체적인 요율산출 체계의 확립을 통해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내 기업들의 활용사례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2000년 이후 화재 등으로 재물 손해가 발생한 공장을 찾고 이들을 다시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 결과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4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4개 기업이 추출되었다.

이들 기업들의 보험가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활용하였다.

국내 기업 중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6조⁴³⁾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의거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휴업등으로 당해 법인의 재산상 변화가 다음 중의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발생한 날 일익까지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가.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 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및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다.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

43)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등) ①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을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자기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을 때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하여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기업의 공시자료에 기초하여 화재사고에 따른 휴업 리스크관리를 보험을 활용한 경우와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 간의 성과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가. 기업휴지보험 가입 사례

1) A 사

A사는 00공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석유화학업체로 이 공장의 사고는 2003년 10월 3일 고밀도폴리에틸렌 제3공장에서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공정 내 반응기의 순환 배관 내에 설치된 스트레너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관을 해체하고 스트레너를 청소하는 작업 중에 반응기에서 핵산이 누출되어 일어난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였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해졌고 2004년 2월 26일이 되어서야 조업을 재개하여 4개월 23일 동안 조업 중단기간을 경험하였으며 당시 공시한 피해액은 900억원으로 알려졌다.

동 기업은 재해에 대비하여 국내 5개 손해보험회사와 재산종합보험(property all risk policy)을 가입하고 있었다. 가입내역을 보면 재산보험금액 1,435,000달러, 기업휴지보험은 3,750억원이며 보상기간은 18개월로 하였고, 제3자 배상책임은 1억 1천 달러를 가입했으며 사고 당 보상한도액은 5억 달러였다. 동 기업은 화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4개월이 초과했음에도 재물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주가의 변동도 거의 보이지 않아 주식 투자자들로 부터도 저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A사는 화재로 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산손해와 휴업손해를 가입한 보험에서 손실을 보상받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주가의 급작스런 변동은 없었다⁴⁴⁾.

실제로 동 기업의 화재 피해액이 자본금의 56.5%, 2002년 영업이익의 165.6%에 해당하는 큰 손해였음에도 보험의 가입으로 인해 화재사고를 복구하기 위한 외부 자금의 조달을 하지 않는 등 재무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동사의 사고 당시에 비해 2년 후의 재무적인 성과를 보면 자산은 1.7배 증가한 반면 부채는 1.2배 증가에 그쳤고, 매출액은 1.4배 영업이익은 2.0배, 당기순이익은 2.4배나 증가했다. 또 부채비율은 사고당시 54.5%에서 2년 후에는 33.5%로 오히려 40%나 줄어들었다. 물론 이는 보험가입에 따른 전적인 효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보험가입의 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4) 머니투데이, 2003.10.21

<표 IV-7> A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자산	유동자산	9,377	6,485	4,044	3,869	3,483
	비유동자산	18,538	16,698	12,860	9,303	10,292
	자산계	27,915	23,183	16,904	13,172	13,774
부채	유동부채	5,460	3,336	2,956	2,783	3,778
	비유동부채	1,553	3,742	3,007	1,440	1,621
	부채계	7,013	7,078	5,964	4,223	5,399
자본	자본금	1,593	1,593	1,593	1,593	1,593
	자본잉여금	4,736	4,736	4,736	4,736	4,736
	이익잉여금	14,341	9,654	4,499	2,416	1,868
	자본계	20,902	16,105	10,941	8,950	8,375
영업 성과	매출액	21,128	19,521	14,603	12,297	9,898
	영업이익	3,401	3,855	1,720	544	130
	계속사업이익	6,145	6,728	2,826	694	91
	당기순이익	5,114	5,353	2,107	595	74
	ROE	24.5/17.0	33.2/24.5	19.3/9.4	6.7/7.3	0.9/-1.6
	ROA	18.3/7.9	23.1/11.3	12.5/3.6	4.5/2.6	0.5/-0.6
	부채비율	33.5/124	43.9/116	54.5/164	47.2/182	64.5/181

주: 1) 사고일자는 2003년 10월 3일임.

2) ROE, ROA, 부채비율의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당해 연도 동종업계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B사

B사는 총자산이 8조 5,000억원, 자본금이 4,195억원이나 되는 대형 기업체이다. B사는 2008년 3월 3일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보일러실, 공조실 및 조립시설의 일부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생산시설을 3개월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매출액이 9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었다. 이는 동사의 2007년 연간 매출액 10조 9,037억원의 0.73%를 차지하는 것이다.

<표 IV-8> B사의 사고전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08 3분기	'08 2분기	'08 1분기	'07 4분기	'07 3분기
자산	유동자산	38,224	32,246	30,025	29,619	22,384
	비유동자산	46,882	43,903	42,135	41,880	40,029
	자산계	85,106	76,149	72,160	70,499	62,413
부채	유동부채	28,204	22,810	19,639	20,302	18,962
	비유동부채	9,138	9,271	12,573	11,415	11,842
	부채계	37,342	32,081	32,212	31,717	30,804
자본	자본금	4,195	4,195	4,195	4,195	3,654
	자본잉여금	13,121	12,994	12,994	12,993	7,396
	이익잉여금	29,751	26,781	22,926	21,991	20,733
	자본계	47,764	44,068	39,948	38,781	31,609
영업 성과	매출액	40,648	37,380	34,481	30,037	27,633
	영업이익	4,429	4,814	3,788	2,211	2,523
	당기순이익	2,970	3,855	2,584	1,258	2,107
	ROE	6.22	8.75	6.47	3.24	6.67
	ROA	3.49	5.06	3.58	1.78	3.38
	부채비율	78.2	72.8	80.6	81.8	97.5

주: 사고일자는 2008년 3월 3일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사는 00손해보험회사에 총 보험가입금액 8,920억원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중 기업휴지보험은 2,604억원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리스크관리대책을 미리 준비하여 놓았기 때문에 외부자금의 동원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이용하여 사고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동 회사의 사고가 발생한 2008년 1분기 전후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보면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달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증권시장에서도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등을 이유로 B사의 주식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나.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사례

1) C 사

C사는 육계를 공급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이 넘는 기업이다. 동사는 2003년 5월 12일 오전 2시에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리스자산이 소실되어 2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2002년도 자산총액의 9.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동사의 주력공장으로 동사의 2002년 생산액 3,263억원의 62%인 2,016억원을 생산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동사는 00손보사에 보험가입금액 195억원의 화재보험만 가입하고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은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험금은 2003년 10월 23일에 확정되어 화재보험금으로 173억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동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하였지만 조업중단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영업손실, 고정비용의 지출과 같은 영업리스크(business risk)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다음의 경영성과 지표를 통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동사는 화재사고로 인해 11개월 동안이 조업이 중단되고 2004년 4월 13일 에서야 생산을 재개하는 동안 관계사인 ○○사를 통해 거래처에 매출하는 형태로 조업활동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IV-9> C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자산	유동자산	1,105	1,065	1,214	1,168	1,190
	비유동자산	1,646	1,603	1,301	969	937
	자산계	2,750	2,668	2,515	2,137	2,127
부채	유동부채	737	1,523	1,460	763	985
	비유동부채	909	690	724	579	361
	부채계	1,646	2,213	2,184	1,342	1,346
자본	자본금	367	267	267	267	267
	자본잉여금	469	250	250	250	250
	이익잉여금	259	-64	-191	239	224
	자본계	1,104	455	330	794	781
영업성과	매출액	3,655	3,853	3,263	3,276	4,098
	영업이익	286	129	-391	2	157
	계속사업이익	329	148	-468	33	84
	당기순이익	315	135	-430	22	52
	ROE	28.5/6.8	29.6/2.8	-130.3/-12.9	2.8/6.6	6.7/15.0
	ROA	11.4/2.1	5.0/0.8	-17.1/-2.4	1.0/1.9	2.5/4.2
	부채비율	149/223	486/260	662/427	169/253	172/259

주: 1) 사고일자는 2003년 5월 12일임.

2) ROE, ROA, 부채비율의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당해 연도 동종업계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만약에 동사가 조업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 휴업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영업성과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가 기업휴지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고정비 지출을 담보받기 위해 가입해야 할 보험가입금액은 2002년 기준으로 산출하여 본 결과 3,560억원에 추정되는데 만약 동사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했다면 11개월 동안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보상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사고와 기업휴지손실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의 실패로 동사의 영업성과는 엄청난 악화를 초래하였는데 화재발생 당해년도인 2003년에는 391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43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화재사

고로 인한 공장 복구를 보험금을 이용하여 보전했다더라도 다른 생산채널을 이용하거나 종업원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부자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채비율은 2002년 169%에서 2003년 66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재물손해와 간접손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D 사

D사는 음식료품 및 담배 등 필수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이다. 동사는 2006년 4월 24일에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1동이 전소되고 그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와 원부자재 및 제품이 소실되어 35억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이 피해규모는 2005년 총자산 654억원의 5.3%에 불과하나 당기순이익 10억원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이로 인해 최대 3개월 동안 조업이 중단되었다.

동사의 경우 보험리스크관리 대책으로 재물손해만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을 00화재와 00화재에 보험가입금액 202억원으로 가입하였고, 휴업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화재사고 보험금은 2008년 5월 소송으로 전개되어 90억원의 보험금 지급판결이 난 상태였고, 따라서 동사는 화재사고 이후 생산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비용의 상당부분을 외부자금 등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로 D사의 2006년의 부채비율은 167%였으나 2007년에는 44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또한 화재발생 해인 2006년의 재무성과를 보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손익이 16억 이익에서 42억원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다음년도까지 계속되어 2007년의 영업성과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D사의 사고 전 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07	2006	2005	2004	2003
자산	유동자산	514	527	245	243	231
	비유동자산	972	587	409	355	421
	자산계	1,486	1,114	654	597	653
부채	유동부채	825	404	219	234	205
	비유동부채	389	293	137	73	135
	부채계	1,214	696	356	307	339
자본	자본금	225	225	225	225	225
	자본잉여금	62	62	62	88	237
	이익잉여금	-7	130	10	-26	-149
	자본계	272	418	298	291	313
영업성과	매출액	806	662	721	692	643
	영업이익	-86	-42	16	5	-67
	계속사업이익	-137	120	10	-26	-149
	당기순이익	-137	120	10	-26	-149
	ROE	-50.5/8.8	28.7/10.6	3.4/11.1	-8.9/8.0	-47.6/8.2
	ROA	-9.2/3.1	10.8/4.0	1.6/5.6	-4.3/5.7	-22.9/4.7
	부채비율	446.7/166	166.7/103	119.6/94	105.4/86	108.3/87

주: 1) 사고일자는 2006년 4월 24일임.

2) ROE, ROA, 부채비율의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당해 연도 동종업계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기업휴지보험 가입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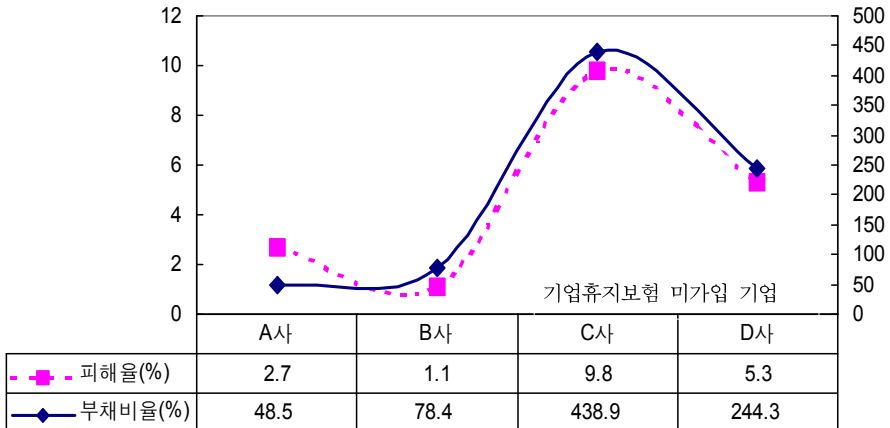
국내의 상장회사들은 재해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나름대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내 상장기업들일지라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공장 건물이나 제조설비, 원부자재 등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물손해와 조업중단에 따른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큰 사고인 경우에는 종업원의 인명피해와 인접공장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까지 발생하기도 하며, 사업실패(business failure)⁴⁶⁾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발생에 대비해 완전한 보험가입 즉 재물손해담보와 기업휴지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때, 성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이 만약 완전하게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금으로 충당하여 신속한 복구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자금을 차입하거나 기업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잉여금으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조달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군(보험 가입)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군(보험 미가입)간의 효과를 사고 발생전후의 부채비율, ROE,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 영업레버리지율(DOL)(율) 비교를 통해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이 어떻게 재해나 사고를 경험한 기업의 경영성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 사고연도에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외부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볼 수 있다(<그림 IV-5> 참조).

46) 호주의 경우 기업에게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70%는 사업실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 Jones(2007),p.2

<그림 IV-5> BI 보험가입여부에 따른 부채비율 차이



두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레버리지(DOL)가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고 기업이 폐업하거나 해당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고정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며 매출액은 감소되기 때문에 영업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영업레버리지는 기업휴직보험을 가입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사고 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기업휴직보험 미가입기업의 영업레버리지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 조업을 하는 과정일지라도 영업레버리지가 높으면서 변동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업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은 기업휴직보험의 가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표 IV-11> 기업휴지보험 가입효과 차이(부채비율, DOL)

구 분		AY _{t+2}	AY _{t+1}	AY	AY _{t-1}	AY _{t-2}	평균	편차	CV	
부채 비율	보험 가입	A사	33.5	43.9	54.5	47.2	64.5	48.5	5.4	0.10
		B사	78.2	72.8	80.6	81.8	97.5	78.4	4.9	0.06
	보험 미가입	C사	149.1	486.3	661.5	168.9	172.4	438.9	249.7	0.57
		D사	920.5	446.7	166.7	119.6	105.4	244.3	176.8	0.72
DOL	보험 가입	A사	28.2	43.4	51.0	17.2	312.6	37.2	17.7	0.48
		B사	11.8	35.4	35.5	13.0	75.1	28.0	13.0	0.46
	보험 미가입	C사	79.0	88.1	2,976.2	18.9	10.4	1027.7	1687.7	1.64
		D사	70.2	31.0	98.5	39.5	145.5	56.3	36.8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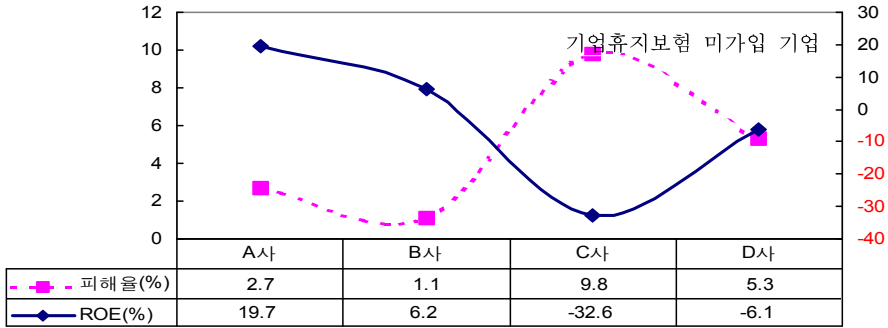
주 : 1) B사는 분기실적이며, D사의 AY_{t+2}은 연도의 반기실적임.
 2) 직전결산기의 총자산대비 피해액 비율은 A가 2.7%, B사 1.1%, C사 4.8%, D사 5.3%임
 3)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CV)는 사고전후 3년간임.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 재가공함

세 번째로는 기업휴지보험 가입기업들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들과의 경영성과에서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고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다음년도에 그 추이를 이어가나,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고 당해년도에 큰 폭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C사와 D사의 경우의 사고당해년도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이익에서 각각 -12.0%, -6.3%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영성과의 차이는 기업휴지보험의 가입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화재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 외에도 매출액 감소와 고정비 지출을 보상해주는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손실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의 손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재해나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6> BI 보험가입여부에 따른 ROE 비교



<표 IV-12> 기업휴지보험 가입효과 차이(ROE, 영업이익율)

구 분		AY _{t+2}	AY _{t+1}	AY	AY _{t-1}	AY _{t-2}	평균	편차	CV	
영업 이익율	보험 가입	A사	16.1	19.7	11.8	4.4	1.3	12.0	7.7	0.64
		B사	10.9	12.9	11.0	7.4	9.1	10.4	2.8	0.27
	보험 미가입	C사	7.8	3.4	-12.0	0.1	3.8	-2.7	8.1	2.83
		D사	-11.8	-10.7	-6.3	2.3	0.7	-4.9	6.6	1.34
ROE	보험 가입	A사	24.5	33.2	19.3	6.7	0.9	19.7	13.3	0.67
		B사	6.2	8.7	6.5	3.2	6.7	6.2	2.8	0.45
	보험 미가입	C사	28.5	29.6	-130.3	2.8	6.7	-32.6	85.6	2.62
		D사	-85.6	-50.5	28.7	3.4	-8.9	-6.1	40.5	6.63

주 : B사는 분기실적이며, D사의 AY_{t+2}은 연도의 반기실적임.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 재가공함

3.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인식

가. 조사방법 및 응답자 수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담당부서를 이용한 방법과 우편발송 방식을 병행하

여 설문조사를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담당 부서에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렇게 회수된 것은 56부이다. 우편발송 방식은 상장회사 명부에서 무작위로 498개 기업을 선정하고 반송용 봉투로 다시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17부가 회수되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사업체는 총 73개 업체이며 업종별 분포 및 매출액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설문 응답 기업체의 업종별, 매출액별 분포

구 분	세부업종/매출액	응답기업 수	점유비(%)
업종별	제조업	57	78.1
	건설업	1	1.4
	부동산업	1	1.4
	숙박업	3	4.1
	음식업	2	2.7
	도소매업	6	8.2
	운송업	1	1.4
	서비스업	2	2.7
	계	73	100.0
매출액별	500억 미만	25	34.2
	500억-3000억	23	31.5
	3000억-1조	10	13.7
	1조 이상	15	20.6

나. 기업휴지보험 가입 기업체 인식

1) 기업휴지보험 가입률

설문에 응한 73개 기업 중 21%인 15개 기업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보험통계에 의한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편, 기업휴지보험의 가입률을 응답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 군에 비해 가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기업 규모별 기업휴지보험 가입현황

(단위: 개, %)

매출액	500억 미만	500억~3000억	3000억~1조	1조 이상
조사 기업수	25	23	10	15
가입 기업수	6	3	1	5
가입율(%)	24.0	13.0	10.0	33.3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500억 미만의 기업은 25개사 중 6개사가 BI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00억~3000억 기업군은 23개사 중 3개사가 BI보험에 가입했고, 3천억에서 1조 사이의 기업은 10개사 중 1개사가 가입했으며, 1조 이상 기업은 15개사 중 5개사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2000년 1월 이후 재해발생 공시를 한 기업 14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에서의 가입률은 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⁷⁾.

2)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에게 가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0%인 9개 기업이 “스스로 기업휴지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 사유로는 5개사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4개 기업은 “기업휴업손실을 이전에 경

47) 해당하는 기업은 크린엔사이언스, 올촌화학, 디피씨, 기린, 대양제지, 일신방직, 조선선제, 풍경정화, 하림, 호암석유, 톨보이, 호성케믹스, LG화학, SK이며 이중 호남석유(사고당시 자산 1조 6,904억), 호성케믹스(840억), LG화학(7조 2,160억), SK(1조 3,816억)이며 비교적 대규모기업체이다.

험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요청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개 기업에서 나타났다.

<표 IV-15> 기업들의 보험가입이유 (복수응답)

(단위 : 개)

보험가입 이유	제조업	숙박업	서비스업	합계
기업휴업 손실을 이전에 경험	4	0	0	4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	6	2	1	9
주주(외국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3	2	0	5
대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요청	1	0	0	1

매출액 규모별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를 보면 기업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매출액 500억미만과 500억~3000억에 속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관리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6개사), "기업휴지 손실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과 주주 또는 외국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험 가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라고 각각 3개사와 4개사가 응답했고, 1개 기업이 대출시 금융기관이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을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들은 설문지의 가입이유에 대해 모두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휴지업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사업중단 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된다.

<표 IV-16> 매출액별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 (복수응답)

(단위 : 개)

기업휴지보험 가입이유	500억 미만	500억~3천억	3천억~1조	1조 이상
기업휴업 손실을 이전에 경험	3	0	0	2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	4	2	0	2
주주(외국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3	1	1	1
대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요청	1	1	0	1

3) 생산중단시 기업휴지보험의 기여도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15개 기업 중에서 5개의 제조업체만 영업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중단기간은 최저 30일에서 최대 180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제조업체 5개 기업들은 기업휴지보험금이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휴지보험가입에 따른 효용이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 규모별로 볼 때에도 보험효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개 회사가 기업휴지보험이 영업중단시 영업정상화에 보통의 도움을 주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활용사례 분석에서 본바와 같이 중소기업일수록 BI 보험의 효용이 더욱 크게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만족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자기회사의 리스크 노출정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도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리스크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적절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IV-17> 기업휴지보험의 영업정상화 도움 정도

(단위: 개사)

매출액	도움이 안되었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500억 미만	-	1	2
500억~3000억	-	-	-
3000억~1조	-	-	-
1조 이상	-	-	2
계	-	1	4

4) 향후 가입의향

현재 기업 휴지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향후에도 기업휴지보험을 계속 가입하겠다는가에 대한 의향을 설문한 결과 93.3%의 기업이 계속 가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숙박업과 서비스업은 100% 가입하겠다는 의향이나 제조업의 경우 91%만 계속 가입하겠다고 답변해와 업종 간 미미한 의향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8> 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계속 가입의향

(단위: 개, %)

구분	제조업	숙박업	서비스업	합계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기업수	12	2	1	15
향후 가입의향이 있는 기업수	11	2	1	14
계속 가입 의향률	91%	100%	100%	93.3%

다. 기업휴지보험 비가입 기업의 인식

1)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을 하여 보았다. 설문조사 결

과, 기업스스로가 38개 기업이 “기업휴업손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라고 응답해 아주 낮은 리스크관리 인식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의 미가입 요인으로는 보험가입을 하는데 있어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33개 기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과 같이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을 기업을 위한 내부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소멸성 낭비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외의 미가입 이유로 보험상품의 복잡성을 6개사가 들고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어서와 보험회사의 엄격한 보험가입심사 때문이라고 각각 3개사, 2개사가 응답했다. 또한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기업들의 이유를 매출액 규모별로 차이를 보면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기업휴지손해를 경험하지 않아 앞으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과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로 볼 때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휴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고 높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19>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이유 (복수응답)

(단위: 개)

구 분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합 계
낮은 기업휴지 손실가능성	33	1	1	2	1	38
높은 보험료	27	2	1	3	0	33
엄격한 보험가입 심사	2	0	0	0	0	2
상품의 복잡성	6	0	0	0	0	6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3	0	0	0	0	3

2) 향후 가입의향

기업휴지보험 미가입 기업들에게 향후에도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겠다는가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52개 기업중 6개사만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간접휴지보험(CBI)에 대해서는 약 7%만이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기업뿐 아니라 음식업, 도소매업과 같은 서비스업종 기업들에서 기업휴지보험 수요(기업휴지: 9개 중 2개, 간접기업휴지: 9개 중 1개)가 작지만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일지라도 제도적인 장치나 여건이 조성되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IV-20> 미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가입의향(업종별)

(단위:%)

구 분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운송업	서비스업	합 계
기업휴지 보험	8.9 (4/45)	0 (0/1)	0 (0/1)	0 (0/1)	50 (1/2)	16 (1/6)	0 (0/1)	0 (0/1)	11.5 (6/58)
간접기업 휴지보험	4.4 (2/45)	0 (0/1)	0 (0/1)	0 (0/1)	50 (1/2)	0 (0/6)	50 (1/2)	0 (0/1)	7.1 (4/58)

주 : 상단의 수치는 가입의향율이며 ()의 수치는 “가입의향회사/업종회사”를 의미함.

그리고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휴지보험 가입의향을 보면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0억 미만의 19개 기업의 경우 2개사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1개사가 간접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억에서 3000억미만인 20개 기업은 2개 기업이 기업휴지보험과 간접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3000억에서 1조 미만의 9개 기업은 2개사가 기업휴지보험에, 1개사가 간접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조 이상 10개 기업은 1개사만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미가입 기업의 휴지보험 가입의향(매출액별)

(단위: 개)

매출액	500억 미만	500억~3000억	3000억~1조	1조 이상	합계
기업휴지보험	2/19	2/20	2/9	1/10	7/58
간접기업휴지보험	1/19	2/20	1/9	0/10	4/58

라.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요인

기업휴지보험은 건물 화재이나 선박 침몰 등을 담보하는 유형의 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재물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고 보험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는 응답 기업들에게 보험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업휴지보험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 IV-22> 기업 휴지보험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선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21.4	5.7	18.6	20.0	22.5	11.6
단순한 상품체계로의 개선	8.6	35.7	25.7	14.3	9.9	5.8
기업휴지보험 전문가 양성	7.1	18.6	10.0	8.6	22.5	33.3
높은 보험료의 인하	41.4	17.1	15.7	12.9	8.5	4.3
가입심사 기준에 대한 완화	-	8.6	11.4	21.4	25.4	33.3
기업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다른 상품의 개발	21.4	14.3	18.6	22.9	11.3	12.4

그 결과,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1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높은 보험료의 인하(41.4%)”, “기업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다른 상품의 개발제공(21.4%)”,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21.4%)”의 순으로 나왔다. 반면에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에 있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6순위의 사유를 보면 “보험회사의 가입심사 기준을 완화(33.3%)”,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전문가 양성(33.3%)”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이들을 보험회사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기업의 활성화 인식은 앞의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휴지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종합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의 수준을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